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 기관(부서)의 장 |
| 람 | |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3-52호
2023. 9. 15.(금)

차 례

규 칙(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65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협의회 운영 규칙(규칙 제966호) 6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88호) 11

고 시(2)

- 대전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3-상서4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23-93호) 19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3-94호) 21

공 고(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위탁운영 협약체결 공고(공고 제2023-988호) ... 22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989호) 23

차 례

입법예고(14)

-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967호) ... 24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971호) 3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973호) 3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979호) 45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980호) 54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981호) 59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982호) 6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983호) 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985호) 79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986호) 8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공고 제2023-987호) 90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990호) ... 101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규칙 등 일괄정비 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991호) ... 14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995호) 167

| | | | | | | | | | |
|--------|--|--|--|--|--|--|--|--|--|
| 공 람 |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 ☎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6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제12조제4항 중 “사제지간”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사람으로”를 “사람을”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 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와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24조제2항 본문 중 “대하여 통산하여 5할을 인정하여 산입하되,”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 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별표 15, 별표 15의2”을 “별표 15”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별표 15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별표 15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5의2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근무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하며,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추가 및 시험위원 위촉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인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함(안 제6조의2).
-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으로 위촉을 제한하도록 정비함(안 제12조).
- 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 라.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범위를 정비함(안 제24조).
- 마. 인사평정 가산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을 신설하고, 언어능력검정시험 가산점은 폐지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5의2).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협의회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6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협의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문, 협의 등 소통 강화를 통한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구청장의 위촉 및 협의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총괄 업무는 행정안전국장이 담당한다.

③ 제3조에 따른 명예구청장 임무와 관련된 업무는 분야별로 해당 실장·국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이 행정안전국장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해당 실장·국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은 활동 사항을 행정안전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명예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의견수렴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 참여, 정책 제안, 정책 자문 및 협의
3. 주요 구정 4개 분야의 실행방안 제안
 - 가. 행정안전분야
 - 나. 복지문화분야
 - 다. 경제환경분야
 - 라. 도시건설분야
4. 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구민과의 소통 활동
5.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명예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야별 해당 실장·국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각 분야별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였던 사람
2.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주요 구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명예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구청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명예구청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심신장애, 건강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임기) 명예구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명예구청장이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구청장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예우) ① 명예구청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명예구청장이 구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명예구청장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당지급) ① 명예구청장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구청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명예구청장의 의무) ① 명예구청장은 임기 중 알게 된 공무상 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가진다.

② 명예구청장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명예구청장 제도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명예구청장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명예구청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명예구청장의 임무, 위촉,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명예구청장의 예우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명예구청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8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로 한다.

제3조 중 “공무직 근로자”를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한다.

제6조 중 “행정안전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각 사업장의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소관부서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영 제15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안전관리자)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를 두고 영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건관리자)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한 보건관리자를 두고 영 제22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산업보건의)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한 산업보건의를 두고 영 제31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10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7명 이내의 부서의 장

제11조제1항 중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시행규칙 제26조”를 “규칙 제26조”로 한다.

5. 특별교육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직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무교육 시간과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교육일지 작성) 구청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 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제1항 중 “관리책임자는”을 “구청장은”으로,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안전보건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업무에 기안하는”을 “업무로 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129조에 따라 매년(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을 “법 제129조(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을 매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작업환경측정) ① 구청장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125조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횟수, 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 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6조제1항 중 “안전관리자”를 “안전보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 중 “안전관리자”를 “관리감독자”로 하고, 제5항 중 “안전관리자”를 “안전·보건관리자”로 하고, 제6항 중 “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을 “규칙 제73조”로 한다.

제7장의2(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2 도급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제37조의2(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청장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같

은 법 제5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7조의3(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구청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매월1회)
 2.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3.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안전 합동점검(3개월 1회)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 및 휴게시설 이용의 협조
- ② 구청장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도급 사업장이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

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제39조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적용 대상 범위를 정비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직무 관련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대덕구 안전보건관리 운영 상 상위법에 맞지 않고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상위법에 맞게 적용 대상 범위를 “공무직 근로자”에서 “근로자”로 확대 정비함(안 제3조).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함(안 제6조).
- 다.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재기제한 내용은 인용조문 형식으로 정비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라. 산업보건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 마. 대덕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10조).
- 바.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자 및 교육시간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 사.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일지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의3 신설).
- 아.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정비함(안 제20조).
- 자. 위험성평가에 대한 규정을 관련 지침 조항을 반영하고 정비함(안 제22조).
- 차.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0조).
- 카. 작업장 보건관리 중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의2 신설).
- 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중 도급 관련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장의2,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 파.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약칭 사용, 용어 순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1조, 제18조, 제22조, 제36조, 제39조).

대전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3-상서4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287-18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소로3-상서4호선)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하고, 동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고시문 열람가능)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과(042-608-51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소로 | 3 | 상서4 | 6 | 국지 도로 | 141 | 대로3-48 | 소로3-상서3 | 일반 도로 | - | 12.02.21. | |
| 변경 | 소로 | 3 | 상서4 | 6 ~ 11.5 | 국지 도로 | 145 | 대로3-48 | 소로3-상서3 | 일반 도로 | - | 12.02.21. | 선형 변경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로3-상서4호선 | 소로3-상서4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변경 - 폭원 : 6m → 6-11.5m - 연장 : 141m → 145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촌동 물류창고 입지에 따른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당해 노선의 연장 및 폭원 등 선형변경 |

2. 관계도서(도면포함) : 게재생략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부여 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
|-----------|-------------|--------------|-------------|--|
| 송촌동 243-5 | 송촌남로19번길 38 | 2023. 9. 15. | 건물신축 | 송촌남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위탁운영 협약체결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대덕구 송촌동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협약일 : 2023. 8. 11.
2. 위탁기간 : 2023. 8. 14. ~ 2028. 8. 13. (5년)
3. 위탁범위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 사무
4. 수탁기관

| 위탁 시설 | 위 치 | 수탁 기관 | | 비 고 |
|-----------------|------------------------|-----------------------|-----|----------------|
| | | 법인(단체)명 | 대표자 | |
| 송촌동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 송촌북로 36번길 10, 2층 (송촌동) | 사회복지법인 대덕사랑 교육문화 복지재단 | 박경배 | 23년 10월말 개소 예정 |

끝.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3. 9. 15. ~ 2023. 9. 29.(15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 나. 대상업소: 립록 (장0용) / 대전 대덕구 한남로12번길 23, 2,3층 (오정동)
 -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립록 (사업자등록 폐업일 2022. 6. 20.)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29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 - 6902.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고독사 예방에 관한 상위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인가구’가 아닌 사회적 고립 상태의 가구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골자)
 - 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나. 주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 다. “1인가구”를 “사회적 고립 가구”로 변경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생활지원과
(전화 : 042-608-6742, FAX : 042-608-3838, E-mail : dogom@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지원과 담당자 도은정(전화 : 042-608-67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조례”로 한다.

제1조 중 “1인가구의 증가”를 “사회적 고립 가구의 증가”로, “1인가구의 사회적”을 “가구의 사회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홀로”를 “사회적 고립 상태로”로, “혼자 임종”을 “임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인가구”를 “가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을 “사회적 고립 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가구”를 “사회적 고립 가구”로 한다.

제4조 중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을 “사회적 고립 가구의”로 한다.

제5조 중 “1인가구”를 “사회적 고립 가구”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을 “사회적 고립 가구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을 “사회적 고립 가구의”로, “1인가구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로 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가구를 말한다.

5. (생략)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4. -----

----- 가구 -----
-----.

5.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① -----

----- 사회적 고립 가구의 -----
-----.

② ----- 사회적 고립 가구-----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가구의 -----

제5조(적용범위) -----

----- 사회적 고립 가구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4. (생략)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사회적 고립 가구의 -----

-----.

1. ~ 7. (현행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① ----- 사회적 고립 가구의 -----

-----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대상) -----
-----.

1. 사회적 고립 가구 -----

2. ----- 사회적 고립 가구 -----

3. 4. (현행과 같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사회적 고립 가구의 -----

예방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생략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내 용 | 의 견 | 비고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97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재산관리관을 동장으로 지정하여 현행 규칙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동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함(안 제2조제2항제2호).
나.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업무주관 부서장으로 지정함(안 제2조제2항제3호).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 10.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전화 : 042-608-5302, FAX: 042-608-3829, E-mail: miyo7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정책과 공유재산 담당자(전화: 042-608-5302, 53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직속기관·사업소에서”를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로, “장”을 “장, 동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장·과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생 략)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 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 리한다. 1. (생 략) 2. <u>직속기관·사업소에서</u> 사용 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사업소의 <u>장</u> (다만, 지도·감독 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장·과 장) 3. <u>본청·직속기관·사업소에서</u> <u>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과</u> <u>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u> <u>업무주관 실장·과장(다만, 동</u> <u>행정복지센터재산 사용 관리</u> <u>는 동장)</u> 4. ~ 6. (생 략) ③ (생 략) |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u>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u> - ----- ----- <u>장, 동장</u> ----- ----- -- 3. <u>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u> <u>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u> <u>재산 - 업무주관 실장·과장</u> 4.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내 용 | 의 견 | 비 고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의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 추진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 가족 및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 지원을 확대하고, 구민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으로 구민을 위한 배려와 편의를 도모하며 일부 이용료 기준을 정비하여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에 따른 다자녀 가족 적용기준을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에서 두 명 이상인 가족으로 정비함(안 제7조제2항제6호).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이용료등의 감면 대상에 신설함(안 제7조제2항제7호).

다. 구민에 대한 시설 이용료의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 이용료 일부를 현실화하여 정비함(안 제7조제3항 및 별표).

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제2항제5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가족친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가족친화과
(전화 : 042-608-6564, FAX : 042-608-3836, E-mail : arirang79@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친화과 담당자 윤정(전화 : 042-608-65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미만”을 “이하”로 “셋”을 “두 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감면 사유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 이용료 및 장난감 대여료 (제6조 관련)

가. 시설 이용료

| 구분 | | 기준시간 | 이용료 | 비고 |
|--|--------------|--------|---------|---------------|
| 다목적실 (소모임 및 교육) | 회의실 (강의실) | 1회 2시간 | 30,000원 | 대덕구민 50%감면 |
| | 빔 프로젝트 | 1회 2시간 | 5,000원 | |
| | 냉난방기 | 1회 2시간 | 20,000원 | |
| 공유부엌 | | 1회 3시간 | 30,000원 | |
| ※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1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 | | |

나. 장난감 대여료

| 구분 | 기준 | 연회비 | 비고 |
|-----|------------------------|------------------|-------------------------|
| 장난감 | 1일 1회 2개 (대여기간 14일) | 일반회원 10,000원 | 연체료 1일 1개당 1,000원 |
| | 1일 1회 2개 (대여기간 21일) | 통합(기관)회원 20,000원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이용료등의 감면) ①(생 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아 또는 그 가족 6.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 제7조(이용료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6. ----이하----- 두 명-----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사유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

관계법령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꿈나무사랑카드) ① 시장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

- 대해서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세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이용 시 할인
 2.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 시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구청장은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시행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 제18936호, 2022. 6. 10., 일부개정, 시행 2023. 6. 11.)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525호, 2023. 6. 9., 일부개정, 시행 2023. 6. 11.)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3. 6. 11. 시행)에 따라 목적 근거 법령 정비함(안 제1조).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3. 6. 11.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함.
 - 1) 대덕구 지명위원의 정원 증원함(안 제2조제1항).
 - 2) 대덕구 지명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요건 변경함(안 제2조제2항).

3)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 기준 신설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

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함.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 10.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전화: 042-608-5304, FAX: 042-608-3829, E-mail: myeongeun1@korea.kr)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도로명주소 담당자(전화: 042-608-53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1조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을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토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제3조 (임기)”를 “제3조(임기)”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 제목 “제4조 (기능)”을 “제4조(기능)”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요사항”을 “주요 사항”으로 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

제5조의 제목 “제5조 (지명의 조사)”를 “제5조(지명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연지명·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를 “모든”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변천과정”을 “변천 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급 행정구역”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로, “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공동조사”를 “공동 조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의견청취)”를 “(의견 청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동의 소속공무원이나”를 “구 소속 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제6조의2 제목 “제6조의2 (회의)”를 “제6조의2(회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제7조 (수당)”을 “제7조(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제8조 (회의록)”을 “제8조(회의록)”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제9조 (운영세칙)”을 “제9조(운영세칙)”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 ----- --. |
|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4명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
|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 ② ----- ----- 토지정책과장-----. |
| ③ ~ ⑥ (생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3조(임기) ----- -----. |
| <신 설> |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4조(기능) ----- -----. |
|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3. ----- 주요 사항 |
|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 제5조(지명의 조사) ① ----- ----- ----- 모든 ----- -----. |
|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 | ② ----- ----- 변 |

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의원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동의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6조의2 (회의) ① ~ ③ (생략)

제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천 과정-----

-----.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
----- 공동 조사 -----

-----.

제6조(의견 청취) -----

----- 구 소속 공무원 -----
또는 -----

-----.

제6조의2(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 -----
구 소속 공무원-----

| | |
|---|-----------------------------------|
| 안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 ----- -----. |
| 제8조 (회의록) (생략) | |
| 제9조 (운영세칙) (생략) | 제9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내 용 | 의 견 | 비 고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98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대덕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골자)
 -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주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라.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
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환경과(전화 : 042-608-6833, FAX : 042-608-3834,
E-mail : sh38@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 담당자 한승호(전화 : 042-608-6833)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
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
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구민의 건강 증진

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약국, 보건소,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용기 설치와 홍보 등 불용의약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내 용 | 의 견 | 비고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신규 공공도서관 설치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하고 기존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규정을 명확하게 보완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신규 공공도서관을 적용범위에 추가하고 그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함(안 제2조 및 별표).
 - 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규정을 보완함(안 제7조제11항).
 - 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표를 정비함(안 제7조제2호 및 제9조제2항).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0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도서관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3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 64 (신탄진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전화 : 042-608-6282, FAX : 042-608-3860, E-mail : judd072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운영과 담당자 김미정(전화 : 042-608-62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덕구 도서관 명칭과 소재지 (제2조 관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산도서관 및 송촌도서관에 적용한다”를 “안산도서관, 송촌도서관 및 석봉도서관에 적용하며,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오전”을 “도서관 개관일 오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서관명 | 소재지 |
|--------|-------------------------------|
| 신탄진도서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 64 (신탄진동) |
| 안산도서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5 (법동) |
| 송촌도서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59 (송촌동) |
| 석봉도서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79, 2층 (석봉동)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학습원의 하부조직인 신탄진도서관, <u>안산도서관 및 송촌도서관에 적용한다.</u> | 제2조(적용 범위) ----- ----- ----- ----- <u>안산도서관, 송촌도서관 및 석봉도서관에 적용하며,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u> |
|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u>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u> 로 한다. ②도서관 사용료는 <u>별표 1과</u> 같이 한다. 다만, 사용 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 <u>도서관 개관일 오전</u> ----- -----. ②----- <u>별표 2와</u> ----- -----. -----. |
|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생략) ② 제1항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반환 및 배상기준은 <u>별표 2와</u> 같다. |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현행과 같음) ② ----- <u>별표 3</u>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내 용 | 의 견 | 비고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석봉도서관의 신규 설치에 따라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정하고, 송촌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석봉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송촌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별표).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0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도서관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3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 64 (신탄진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전화 : 042-608-6282, FAX : 042-608-3860, E-mail : judd072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운영과 담당자 김미정(전화 : 042-608-62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서관 이용시간(제2조 관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월요일”을 “월요일, 석봉도서관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관련 별표의 이용시간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 분 | |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 월말까지 | 비 고 |
|-----|--------|-------------------|----------------------------|-----|
| 열람실 | 신탄진도서관 | 07:00 ~ 22:00 | 08:00 ~ 21:00 | |
| | 안산도서관 | | | |
| 자료실 | 신탄진도서관 | 09:00 ~ 18:00 | | |
| | 안산도서관 | | | |
| | 송촌도서관 | | | |
| | 석봉도서관 |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휴관) ①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신탄진도서관 및 송촌도서관 은 매주 금요일, 안산도서관은 매주 <u>월요일</u> ② (생 략) | 제3조(휴관) ①----- -----. 1. (현행과 같음) 2. ----- ----- -- <u>월요일</u> , 석봉도서관은 매 <u>주 일요일</u> ② (현행과 같음)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내 용 | 의 견 | 비고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 내 국민체육센터의 신설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명칭 및 위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신규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함(안 별표 1).
 - 나. 시설별 사용료에 신규 시설을 추가함(안 별표 2).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전화: 042-608-6273, FAX: 042-608-3823, E-mail: gerty7@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자 (전화: 042-608-627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명 칭 | 구 분 | 위 치 |
|------------------------|--------------|-----------------------------------|
| 대덕문화체육관 | 체육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85 (목상동) |
| 중리근린공원 국민체육센터 | 체육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로41번길 28, 2층 (중리동) |
| 을미기체육공원 | 축구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120 (신일동) |
| | 실외테니스장 | |
| | 족구경기장 | |
| 대덕국민체육센터 | 수영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101 (목상동) |
| | 헬스장 | |
| | 다목적실 | |
| 송촌생활체육공원 | 실외테니스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110, 실외테니스장 (송촌동) |
| | 풋살경기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풋살경기장 (범동) |
| | 족구경기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족구장 (범동) |
| | 배드민턴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배드민턴장 (범동) |
| | 게이트볼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게이트볼장 (범동) |
| | 농구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농구장 (범동) |
| | X-게임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X-게임장 (범동) |
| 로하스 산호빛공원 | 야외수영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7번길 200 (석봉동) |
| 송촌천천후 게이트볼장 | 게이트볼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57 (송촌동) |
| 대청수상 레포츠센터 | 관리동 및 승선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67 (신탄진동) |
| | 하선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7번길 200 (석봉동) |
| 로하스타워1 어린이 스포츠센터 | 어린이 스포츠센터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67 (신탄진동) |
| 덕암야구장 | 야구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산 9-7번지 |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 관련)

가. 전용사용료

(단위: 원)

| 시 설 명 | 사용구분 | 기 준 | 구 분 | | 비 고 | |
|----------------|---------|-----------------|-----------------|-----------|--|---|
| | | | 평일 | 주말 | | |
| 대덕문화체육관 | 체육경기 | 1회 (1일, 4시간) | 50,000 | 75,000 | ○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 |
| | 체육경기외 | 1회 (1일, 4시간) | 62,500 | 93,800 | | |
|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 체육경기 | 1회 (1일, 2시간) | 37,500 | 62,500 |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징수함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계산함 | |
| | | 1회 (1일, 4시간) | 62,500 | 93,800 | | |
| | 체육경기외 | 1회 (1일, 2시간) | 75,000 | 125,000 | | |
| | | 1회 (1일, 4시간) | 125,000 | 187,500 | | |
| 족구경기장 | 체육경기 등 | 1면, 2시간 | 3,000 | 5,000 | | |
| 대 덕 국 민 체 육 센터 | 수영장 | 체육경기 | 1회 (1일, 4시간) | 200,000 | 300,000 | ○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대덕문화체육관 및 을미기 체육공원 축구장 전용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
| | | 체육경기외 | 1회 (1일, 4시간) | 300,000 | 450,000 | |
| | 다 목 적 실 | 1회 (1일, 4시간) | 40,000 | 60,000 | ○ 다목적실 1실 사용료 기준 | |
| 풋살경기장 | 체육경기 등 | 1면, 1시간 | 12,500 | 25,000 | ○ 조명 사용 시 사용료에 1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조명 사용료 제외) | |
| 대 청 수 상 레포츠센터 | 체육경기 | 1회 (1일, 8시간) | 1,000,000 | 1,000,000 | ○ 사용가능 시간(09~18시) | |
| | 체육경기외 | 1회 (1일, 8시간) | 1,300,000 | 1,800,000 | | |
| 덕 암 야 구 장 | 체육경기 | 1회 (1면, 2시간) | 40,000 | 80,000 | ○ 사용가능 시간(09~18시) | |
| | 체육경기외 | 1회 (1면, 2시간) | 50,000 | 100,000 | | |

나. 시설사용료

(단위: 원)

| 시 설 명 | 사 용 료 | | | | 비 고 | |
|-------------------------|-----------------|--------|--------|--------|---|--|
| | 사용구분 | 어 른 | 청소년 | 어린이 | | |
| 대덕문화체육관 중리근린공원국민체육센터 | 월 회원권 | 30,000 | 22,000 | 15,000 | ○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
| | 1회 이용 | 2,200 | 1,700 | 1,400 | | |
| 대덕국민 체육센터 | 수영장 (자유이용) | 월 회원권 | 52,000 | 38,000 | 29,000 | ○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 | | 1회 이용 | 4,300 | 2,700 | 2,000 | |
| | 수영장 (강습) | 월 회원권 | 62,000 | 48,000 | 39,000 | |
| | | 월 회원권 | | 50,000 | | |
| | 헬스장 | 1회 이용 | | 2,500 | | |
| 다목적실 | 월 회원권 | | 62,500 | | | |
| 실외테니스장 | 평일 (1면, 1시간) | 4,000 | | | ○ 프로그램 참가 월 회원 ○ 조명 사용 시 3,000원 추가 ○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조명 사용료 제외) | |
| | | | | | | 주말 (1면, 1시간) |
|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 1회 이용 | 6,300 | 5,000 | 3,800 | ○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입장 시 보호자 동반해야 함 ○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
| 어린이스포츠센터 | 1회, 2시간 | 5,000 | - | 17,000 |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 |
| 대 청 수 상 레포츠센터 | 카누·카약 | 1회 이용 | 25,000 | 23,000 | 20,000 | ○ 입장 가능 연령을 7세 이상으로 제한함 ○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 | 레프팅 | 1회 이용 | 20,000 | 18,000 | 15,000 | |
| | 오리배 | 1회 이용 | 10,000 | 6,000 | 4,000 | |
| | 노보트 | 1회 이용 | | 20,000 | | |
| | 수상자전거 (2인승) | 1회 이용 | | 12,000 | | |
| | 수상자전거 (3인승) | 1회 이용 | | 15,000 | | |
| 범퍼보트 (2인승) | 1회 이용 | | 15,000 | | | |

다. 부속설비 사용료

| 구분 | 사 용 료 | 비 고 |
|---------------------|---|-----|
| 음향시설 (확성기 및 마이크) | 기본료(30,000원)+마이크 1대당 5,000원 | |
| 전 기 료 | ① 주변압기 전력기본요금×1.1 ② 전력사용량(kw)×전력요금×1.1 | |
| 냉방·난방 시설 | 기본료(30,000원)+(전기요금 및 유류대 실비) | |
| 전 광 판 | 30,000원(1회) | |

라. 중계 방송료

(단위: 원)

| 종 류 | 기 준 | 방 송 료 | | 비 고 | |
|----------------|------|-------|-----------------|--------|--|
| | | TV | 라 디 오 | | |
| 프 로 경 기 | 국제경기 | 1일 | 30,000 | 18,000 | |
| | 국내경기 | 1일 | 18,000 | 10,000 | |
| 아 마 추 어 | 국제경기 | 1일 | 15,000 | 8,000 | |
| | 국내경기 | 1일 | 8,000 | 6,000 | |
| 체 육 외 행 사 | | 1회 | 40,000 | 20,000 | |
| 녹 화 또 는 행 사 | | | 중계 방송료의 1/2 해당액 | | |
| 경 기 또 는 행 사촬 영 | | | TV중계 방송료와 동일 | | |

마. 상행위 사용료

(단위: 원)

| 구분 | 기준 및 규격 | 사용료 | 비 고 |
|---------------------------|-----------|--------|--|
| 에드벌론 및 유사물 계약에 의한 광고행위 | 1일 1개 | 5,000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함 (다만,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
| 그 밖의 사용료 (선전광고 게시 등) | 1M×10M 이내 | 50,000 | ○ 5일 이내: 50,000원 ○ 매 1일 경과 시 5,000원 추가 ○ 연간 게시: 공개경쟁입찰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내 용 | 의 견 | 비고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노후화로 인하여 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골자)
 - 가.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
 - 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 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간사를 “주택복지팀장”에서 “주거복지팀장”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공동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공동주택과(전화 : 042-608-4162, FAX : 042-608-3830, E-mail : hwikeun123@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과 담당자 김휘근(전화 : 042-608-41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관할동장에게 제출하고, 관할동장은 가능한 해당 지역의 구의원과 협의를 거친 후 구청장에게 일괄”을 “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주택복지팀장”을 “주거복지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내 용 | 의 견 | 비고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속가능발전법」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의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백서의 발간 주기를 개정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 가. 「지속가능발전법」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의 협의회 명칭을 변경함(안 제17조).
 - 나. 환경백서의 발간을 '2년마다'에서 '필요시'로 변경함(안 제19조).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환경과(전화: 042-608-6813, FAX: 042-608-3834, E-mail: difference8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 담당자 이해선(전화: 042-608-68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협의회 설치)”를“(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를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기능”을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4호) 중 “필요한”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대안에 관한 사항
- 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를 “필요시 환경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은 제1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7조(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 자문</p> <p>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문 및 환경보전운동 주도</p> <p>3. 대덕의 제21의 행동원칙과 실천과제의 추진</p> <p>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p> <p>④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p> | <p>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p> <p>② 위원회-----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p> <p>1.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p> <p>2.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대안에 관한 사항</p> <p><삭 제></p> <p>3.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p> <p>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p> <p><삭 제></p> |

| | |
|---|--|
| <p>으로 구성한다.</p> <p>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이나 시민단체, 각 분야의 전문가, 구민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⑦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9조(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필요한 경우 매년 작성할 수 있다.</p> <p>② (생략)</p> |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19조(환경백서) ① -----) -----) -----) -----) 필요시 환경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단서 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 내 용 | 의 견 | 비고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98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골자)
 - 가.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구청장, 구민 및 사업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환경과(전화: 042-608-6813, FAX: 042-608-3834, E-mail: difference8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 담당자 이혜선(전화: 042-608-68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대덕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대덕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덕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4.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5.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0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

능) ①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소

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 홍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2.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 내 용 | 의 견 | 비고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덕구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제명과 인용 조문 등이 일치하지 않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조직개편 후 미정비된 조직 명칭 및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골자)
 -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불부합한 법령 등 인용조문을 정비함.
 - 나. 조직개편으로 미정비된 팀 명칭을 변경함.
 - 다.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이와 관련된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을 정비함.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전화: 042-608-6061, FAX: 042-608-3811, E-mail: lmseon0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전화: 042-608-60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
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를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을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건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한다.

제14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제8조”를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의2 및 제8조”를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를」 제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를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자문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단은 다음 각호”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

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6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청소년팀장”을 “청년청소년팀장”으로 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6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2호바목 중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합창단”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19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

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20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리계 관리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

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규칙 제57조제3호 나목”을 “규칙 제63조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2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보호법」”으로, “제8조제2항제3호의2”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 제8조”를 “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2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24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 15의2제9호”를 “별표 15의2제10호”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의 개정)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 m.go.kr)을 말한다. 3. (생 략) | 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 ----- -----. 3. (현행과 같음) |
|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 ----- ----- -----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비치·관수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 ----- ----- ----- ----- ----- ----- ----- ----- ----- |
| 제3조(특수공인) ① (생략) ②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인을 가질 수 있다. | 제3조(특수공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회계법」 제46조----- ----- ----- ----- ----- ----- ----- ----- ----- ----- |
| 제14조(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준용)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 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회계법」 제46조-----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 | 제1조(목적) --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
|--|--|
| 덕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 -----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 ③ (생략) |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④ ----- ----- -----. |
|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 1. 「건설기술 진흥법」----- |

| | |
|---|---|
|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 ----- ----- ----- |
| 2. 3. (생략) | 2. 3. (현행과 같음) |
| ⑤ ~ ⑦ (생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생략) |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 -----. |
| ③·④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 | 제1조(목적) --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 |

| | |
|--|--|
| 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리자문단----- ----- ----- --. |
|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1. ~ 5.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6. 그 밖에 ----- ----- |
| 제3조(구성) ① (생략) |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②----- -----. |
| 1.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
| 4. (생략) | 4. (현행과 같음)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 | 4. ----- 「민원 처 |

| | |
|---|---|
| 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 창구를 말한다. | 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
| 5. ~ 7. (생략) | 5. ~ 7. (현행과 같음) |
|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
|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 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 ②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12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 제12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
| ① (생략) | ① (현행과 같음) |
|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②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 |
|-----------------------------|-----------------|
| 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11조(운영비 보조) 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② (현행과 같음)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사용료 등)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 5. (생략)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 15. (생략) ④ ~ ⑥ (생략) | 제9조(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 7. ~ 15.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청소년팀장</u> 으로 한다. | 제8조(간사) ----- ----- ----- <u>청년청소년팀장</u>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 |

| | |
|--|--|
| 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 유) ----- ----- 제2조제8호----- ----- ----- ----- ----- ----- -----. |
| 1. ~ 12. (생략) | 1. ~ 12. (현행과 같음)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25조(사용료 및 감면) ①·② (생략) | 제25조(사용료 및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 -----.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 ----- |
| 가. ~ 마. (생략) | 가. ~ 마. (현행과 같음) |
| 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 | 바.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 |
|----------------------------|----------------|
| 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아 또는 그 가족 | ----- -----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 현행 | 개정안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 |
| 제2조(구성) ①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7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단원의 해촉)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 및 규정을 위반한 자 | 4. 그 밖에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3조(공공급식의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대상은 대덕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 제13조(공공급식의 지원대상) ① ----- |

| | |
|--|--|
| 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 3. (생략)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 5. ~ 7. (생략) ② (생략) |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리계 관리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u>규칙 제57조제3호 나목</u> 및 다목의 경우에는 구청장, | 2. <u>규칙 제63조제3호나목</u> -----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 |
|---------------------------------------|------------|
|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 <u>동물보호법</u> ’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개·고양이 등,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 4. (생략) | 제2조(정의) ----- -----. 1. ----- 「 <u>동물보호법</u> 」 제2조제7호----- ----- -----. 2. ~ 4. (현행과 같음) |
|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생략) ② 주민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10조----- ----- -----. |
|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 법 제34조제1항-----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u>지방회계법</u>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지방회계법</u> 」 ----- ----- -----. |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

- 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 따라 해당 민원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⑦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의 범위 및 감면 비율과 제6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의 청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

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수리계의 해산 기준
 - 가.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나.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
 달된 때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손
 괴되어 그 개수·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 13. (생 략)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임에 이르게 하
 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
 서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
 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혹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
 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 2017. 12. 29.>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 9. (생략)

10.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 내 용 | 의 견 | 비고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9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규칙 등 일괄정비 규칙안」 입법예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규칙 등 일괄정비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규칙 등 일괄정비 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덕구 규칙 중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제명과 인용 조문 등이 일치하지 않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조직개편 후 미정비된 조직 명칭 및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골자)
 -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불부합한 법령 등 인용조문을 정비함.
 - 나. 조직개편으로 미정비된 부서 명칭을 변경함.
 - 다.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이와 관련된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을 정비함.
4. 의견제출
 -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전화: 042-608-6061, FAX: 042-608-3811, E-mail: lmseon0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전화: 042-608-606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규칙 등 일괄정비 규칙안**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4조”로, “사업소장,동장”을 “사업소장, 동장”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4조에 따른”으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

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하며”를 “업무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조례·규칙 심의회”를 각각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조례·규칙 심의회 업무담당자는”을 “심의회 업무담당자는”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조례·규칙 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조례·규칙 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조례·규칙 심의회 업무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심의회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라”로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대덕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대덕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대덕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1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을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한을 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대리한다”를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대덕구 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

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지원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규칙

| 현 행 | 개 정 안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규칙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규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4조----- ----- ----- ----- 사업소장, 동장-----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

| | |
|---|---|
|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정의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 ----- ----- ----- ----- -----. |

□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 현 행 | 개 정 안 |
|---------------------------|------------------------------|
|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시행규칙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 | |
|---|---|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u>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u>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 <u>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u> ----- ----- ----- ----- |
| 제2조 (안전심의) ① <u>조례</u>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을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2조 (안전심의) ① <u>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u> ----- ----- ----- ----- |
|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
|--|---|
|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홍보실장, 세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u>회”라 한다</u> ----- ----- ----- ----- |
|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 <u>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u> 」을 준용한다. | 제6조(준용) ----- ----- 「 <u>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u>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54조에 따른 -----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 ----- ----- |
|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 | 제2조(위원회 구성) ① <u>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u> (이하 “위원 |

□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 현행 | 개정안 |
|--|---|
| <u>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u> | <u>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u>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규칙심의회----- ----- ----- |
|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2조(기능) <u>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규칙심의회</u> (이하 “심의 |

| | |
|--|--|
| 1. ~ 5. (생략) | 회”라 한다)-----. |
|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의장의 임무) ① ----- ----- 업무를 총괄하며 -----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9조(의안 제출) ①·② (생략) | 제9조(의안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작성한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u>조례·규칙 심의회</u> 업무담당자의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친후 심의안건 표지(별지 제1호 서식)에 조례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 ----- <u>심의회</u> ----- ----- -----. |
| ④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소관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장이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1호서식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자료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 ----- |
| 1.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구청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u>조례·규칙</u> | 1. ----- ----- ----- <u>심의회</u> ----- |

| | |
|--|--|
| <u>심의회</u> 업무담당자는 소관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 ----- ----- -----.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 ⑤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u>조례·규칙 심의회</u>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 ----- <u>심의회</u> ----- ----- -----. |
| ⑥ <u>조례·규칙 심의회</u> 업무담당자는 필요시 관계부서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완료시에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상정일자를 확정된 후 상정의안하단 중앙에 “ <u>조례·규칙 심의회</u> 업무담당자 심사필”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 ⑥ <u>심의회</u> 업무담당자는 ----- ----- ----- ----- ----- ----- ----- ----- -----. |
| 제10조(의안배부) <u>조례·규칙 심의회</u> 업무담당자는 심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제10조(의안배부) <u>심의회</u> ----- ----- ----- ----- ----- ----- -----. |

| | |
|--|--|
| 하다. 제14조(간사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조례·규칙 심의회</u>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생략) | ---. 제14조(간사등) ① ----- ----- ----- <u>심의회</u> ----- -----. |
| 제15조(회의록등) ① (생략) ② <u>조례·규칙 심의회</u> 업무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회의록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심의회</u>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규칙

| 현행 | 개정안 |
|---|---|
| <u>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규칙</u> | <u>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 규칙</u>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라 ----- ----- ----- ----- |

| | |
|---|--------------------------------|
|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 현행 | 개정안 |
|---|--|
| <u>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u> | <u>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u> |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하며, 국장이 부득이한 사 |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 ----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한을 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는 ----- ----- ----- ----- |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장·과장이 대행한다.

②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위원·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 4. (생략)

③ 구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 3.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3조 (지정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 어느 하나에

1. ~ 3. (현행과 같음)

④ ----- 제2항에 따라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제4조 (책임) ----- 제3조에 따라

□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 현행 | 개정안 |
|---|---|
|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근무 규칙 |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생략)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u>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u>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공무원 여비 규정</u> 」 제18조에 따른 -----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6조(출장의 절차) ① <u>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u> | 제6조(출장의 절차) ① 「 <u>공무원 여비 규정</u> 」 제18조에 따른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출·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결산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조례·규칙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으로 한다.

③ 조례·규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사무인계) ① 법 제119조에 따라 퇴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그 소관 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한다.

1.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
2.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하는 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제65조(사무인계의 방법) 제64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에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 등 재산 목록
3.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수입·지출의 현재 상태를 계산한 표) 및 잔액증명
4. 기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제66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

계를 받는 경우

3. 제64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제67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5조 각 호의 사항 중 사무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 또는 대장으로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제68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

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규칙 등 일괄정비 규칙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 내 용 | 의 견 | 비고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기준 및 다태아 출산 배우자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하는 등 위임사항 및 개정된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제19조의2 및 별표 3).

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의3 신설).

다.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 일수를 15일로 확대함(안 별표 4).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총무과(전화 : 042-608-6502, FAX : 042-608-3821, E-mail : kymbio@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 담당자 김영민(전화 : 042-608-65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중 “2년”을 “5년”으로,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표 4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3(중전의 별표 4) 및 별표 4(중전의 별표 3)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9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신·구조문대비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 구 분 | 대 상 | 일 수 |
|-----|---------------------------------|------------------------------------|
| 결 혼 | 본인 | 5 |
| | 자녀 | 1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출 산 | 배우자 |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증조부모·외조부모·외증조부모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 회 갑 | 본인 및 배우자 | 1 |
| 탈 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 입 양 | 본인 | 20 |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9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 | 제19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 5년 ----- ----- ----- ----- 별표 3----- --. |
| <신 설> | 제19조의3(시간외근무시간 저축 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이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 제23조 (특별휴가) ① ----- ----- ----- 별표 4----- -----. |
| ②·③ 삭제 | |
| ④ ~ ⑫ (생략) | ④ ~ ⑫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 |
| 1년 이상 2년 미만 | 12 |
| 2년 이상 3년 미만 | 14 |
| 3년 이상 4년 미만 | 15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6년 이상 | 21 |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 (제7조의7제2항 관련)

| 구분 | 대 상 | 일수 |
|----|-----------------|--------------------------------------|
| 결혼 | 본인 | 5일 |
| | 자녀 | 1일 |
| 출산 | 배우자 |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 입양 | 본인 | 20일 |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1일 |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